[통합]산업안전보건교육 (2) 3H 요약집

-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
 - 1. 사망자 1명 이상 발생
 - 2. 동일한 사고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발생
 - 3.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
 - 4. 동일한 사고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 발생
-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
 - 1. 사망자 1명 이상 발생
 - 2.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
 - 3.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발생
 - 4. 동일한 사고로 3개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5명 발생
-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,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 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어야 함
- 중대산업재해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상의 조치 확립
 - 1.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수준 점검
 - 2.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
 - 3. 안전보건 관련 명확한 상벌규정 정립
 - 4. 컴플라이언스 활동 강화
- 일반적 스트레스 원인 중 생활사건 해고
-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해당하는 것
 - 1. 시간적 압박
 - 2. 업무시간
 - 3. 조직구조
 - 4. 조직에서의 역할
 - 5. 대인관계 갈등
 - 6. 조직 외적인 스트레스 요인
- 개인적 차원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
 - 1. 규칙적인 생활습관
 - 2. 충분한 수면 유지
 - 3. 긴장 이완방법 습득 및 활용
-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 유형
 - 1. 물리적 환경
 - 2. 직무요구
 - 3. 직무자율
 - 4. 직무불안정
 - 5. 관계갈등

- 6. 조직체계
- 7. 보상부적절
- 8. 직장문화
- 건강검진 종류
 - 1. 채용 시 건강진단
 - 2. 일반 건강진단
 - 3. 특수 건강진단
 - 4. 배치 전 건강진단
 - 5. 수시건강진단
 - 6. 임시건강진단
- 발암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보존기간 30 년간
- 사무직 직원의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 2년 1회 이상
-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중 벤젠취급작업의 배치 후 첫 번째 실시시기 -2 개월(6 개월 주기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)
- 건강진단 후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하는 시기 -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